

강사료 지급 규정

제정 : 1998. 04. 06.

개정 : 2015. 02. 06.

개정 : 2019. 07. 22.

담당 : 교학팀(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강의의 구분 및 용어 정의)	제3조(강사료 지급대상)	제4조(강사료의 지급 기준액)
제5조(강사료 지급의 특혜)	제6조(강사료 지급)	제7조(수강인원 초과강사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및 용어 정의) ① 평상수업을 '보통 강의'라 한다.

② 국내외 저명인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수업을 '특별 강의'라 한다.(개정19.07.22)

③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 강의'라 한다.

④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 강의'라 한다.

⑤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수업을 '특수 강의'라 한다. (05.1.14)

⑥ '강의시간'이란 강의실 등에서 학점이수단위 담당교과목을 교수하는 시간으로 하되, 교수하는 시간과 담당 강의를 계획·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평가·환류 등 운영,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신설19.07.22)

제3조(강사료 지급대상) ①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19.07.22)

② 특별강의 강사료는 특별강의를 한 인사에게 사전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

③ 초과강의 강사료는 사전 계약한 책임시간을 초과 강의한 비전임교원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총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19.07.22)

④ 수강인원 초과강사료는 일정한 인원을 초과한 강의를 담당한 강사에게 지급한다.(개정19.07.22)

제4조(강사료의 지급 기준액) ①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은 매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② 강사료는 주 단위로 계산한다. 단 학기말 종강의에 있어서는 일주 미만은 일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특수강의는 보통강의와 동일하게 강사료를 계산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비율 달리 계산할 수 있다.(05.1.12)(개정19.07.22)

④ 강사에게 매 학기 강의 외의 학사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과 내용은 별

도로 정한다. (신설 2010.4.12)(개정19.07.22)

제5조(강사료 지급의 특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기간
 2. 교내행사, 국경일 및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 할 때
 3. (삭제19.07.22)
 4. 정규강의 시간 이외에 학교 당국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할 때. 단,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 ② 특별대우를 하지 않으면 필요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추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강사료는 매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개정19.07.22)

제6조(강사료 지급) ①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매월 25일에 해당월 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 지급한다.(개정19.07.22)

② 강사의 강사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신설19.07.22)

1. 강사의 학기 중 4개월 급여는 학기단위로 강의료를 산출한 후 11분의 8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2. 강사의 방학 중 2개월 급여는 학기단위로 산출한 강의료의 11분의 2를 매월 지급하되, 마지막 월에는 본교 재원으로 강의료의 11분의 1과 정부부담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제7조(수강인원 초과강사료) 1강좌의 기본 수강인원은 100명까지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수강인원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의 강사료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개정19.07.22)

수강인원	지급액	비고
101 - 119명	1강좌 강사료*110%	
120 - 139명	1강좌 강사료*120%	
140 - 159명	1강좌 강사료*130%	
160 - 179명	1강좌 강사료*140%	
180명 이상	1강좌 강사료*150%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